

기후외교법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2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김 건 · 유용원 · 김태호
김용태 · 우재준 · 김기웅
안상훈 · 이소희 · 조지연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방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외교의 기본원칙·전략·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후외교는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사회 노력 및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동참, 국제협력 강화, 기후안보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가의 책무로서 기후외교에 관한 체계적인 전략·정책의 수립·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민 참여 증진, 기후안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의 기본원칙·전략·추진목표와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 방안 등에 관한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기후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바. 외교부장관이 기후위기 및 기후안보 대응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는 기후외교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기후외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외교"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이하 "기후위기"라 한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상, 국제협력 및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의 체결 등 외교활동을 말한다.
2. "기후안보"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극한기후 등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대응하고, 기후대응에 필요한 기술·산업 역량 및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후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
2.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3.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기후외교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5.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기후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기후외교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기후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

여야 한다.

⑥ 국가는 기후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후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외교의 기본원칙·전략·추진목표와 방향
2. 기후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후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의 적극 참여 방안
6.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방안
7. 대한민국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주요 직위

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 협력 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후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후외교위원회) ① 기후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후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안보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인 동향 파악·분석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는 기후외교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는 기후외교의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